

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안사유

「주차장법」 제4조에 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고,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자 함.

### 2. 관계법령

「주차장법」 제4조, 동법시행규칙

### 3. 주요골자

가.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에서 3개 구역 이내로 지역여건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.

▷ 제2조의2 신설

나.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관리자 선정순서 중 기타의 경우에 납부방법을 1년 단위로 선납하고, 분납시 연 4회 이내에 연6%의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게 함

▷ 제6조제2항 표의3.

다.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전일제, 주간제(08:00~20:00), 야간제(20:00~익일08:00)로 운영 ▷ 제13조제3항.

라. 주거지전용주차장 등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동장이 추천하는 국민운동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청장이 정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게 함 ▷ 제13조제5항.

#### 4. 검토의견

본 조례 개정 건은

- 차량의 증가추세와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불법주차행위가 성행 주민들의 불편 가중과 교통 두절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현 실태를 해소하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며
- 주차환경지구의 지정,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시간제 운영,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분납제 실시 등 일련의 주요개선 쟁점사항은 행정의 능률성 확보와 효과성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
- 또한 중구, 서구를 비롯하여 동구, 남구, 동래구 등 5개구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련 조례를 제·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, 여타 구·군에서도 제·개정 준비 중에 있으며
-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에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련 위임근거와 주차장설치에 따른 사후관리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

위 조례 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